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(용혜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2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용혜인·한창민·정춘생

염태영 · 송재봉 · 이광희

이용선 · 서미화 · 김준형

윤건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·수령 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가 간의 군사적 대립, 난 민의 발생 등으로 인한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, 전쟁범죄를 포함하 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음.

이에 지급절차 중 허가를 필요로 하는 요건에 '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,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'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(안 제15조제2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제2호 중 "유지하기"를 "유지하고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,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지급절차 등) ① (생 략)	제15조(지급절차 등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	2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	
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	
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·비	
거주자,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	
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	
거주자에게 그 지급 또는 수령	
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	
수 있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국제 평화 및 안전을 <u>유지하</u>	2
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	고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
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	죄,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
	<u>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</u>